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60

발의연월일: 2022. 6. 10.

발 의 자:배준영·김상훈·강대식

양금희 • 구자근 • 조명희

정우택 • 이태규 • 이종배

김용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 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예금금리"라한다)과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대출금리"라한다) 및 그 차이(이하 이 조에서 "예대금리차"라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한다.
-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예대금리차의 합리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전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
| 제공) ① ~ ⑤ (생 략) | 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⑥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 |
| |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예금 |
| | 금리"라 한다)과 각종 대출 등 |
| |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율(이하 |
| | 이 조에서 "대출금리"라 한다) |
| | 및 그 차이(이하 이 조에서 |
| | "예대금리차"라 한다)를 대통령 |
|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
| | 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 <u><신 설></u> |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
| | 공시되는 예대금리차의 합리성 |
| | 및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
| | 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 <u><신 설></u> |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
| | 권고를 하기 전에 「한국은행 |
| | 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
| | 의견을 들어야 한다. |